

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
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이 현 찬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
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
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구성원
으로 확대하는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
것입니다.

- 주요 내용은, 제2조제2항다목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
자격을 “무주택 세대주”를 “무주택 구성원”으로 확대
하여, 남녀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공매입

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.

-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 등 '주거약자'들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선정 기준을 '무주택 세대주'로 하여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(특히 여성)는 제외됐고 부부 공동 명의의 임차도 불가능했습니다.
- 이에, 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」를 개정하여 세대원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,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여성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안은,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 약자의 거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□ 감사합니다.